아름다운 이 수 행복한 시 인

제2021-195호 2021년 10월 19일(화) 시



보

시 정 지 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3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고 시

ㅇ 여수시 고시 제2021-449호 도로지정(변경)공고(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95번지)

공 고

0	여수시	공고	제2021-2784호	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	4
0	여수시	공고	제2021-2785호	도로지정공고[둔덕동 188—2번지]	17
0	여수시	공고	제2021-2786호	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	18
0	여수시	공고	제2021-2788호	도로지정 변경 공고(사곡리 674-43번지 외)	19

기 타

회				
람				

[여수시 공고 제2021-449호]

도로 지정(변경) 공고

여수시 소라면 복산리 산 395번지 외 1필지 상 건축허가[2021-허가민원과-신축허가 -16호]와 관련하여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(변경)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구분	도 로	위 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 고
당초	7	1			851	도로대장 참조	
변경	7:	1)			921	(허가민원과 비치)	
당초	소라면	산 395	41	6	300		
12.2	복산리	1289	61	6	551		
		산 395	41	6	300		
변경	소라면	1289	61	6	551		
[건경	복산리	1290	17.5	4	64		
		1291	6	1	6		

※ 도로지정공고(당초) : 제2021-331호 (2021. 1. 27.)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10. 19.

여수시 공고 제2021 - 2784호

공 고

「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 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0. 19.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여수시 옴부즈만으로부터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개선 권고 및 「국 민권익위원회」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을 통해 합류식지역과 분류식지 역 하수도 사용자의 합리적 하수도 사용료 부과
- O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,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O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법령 및 조항 정비(안 제16조제3항, 안 제34조, 별표 2, 별지 2)
- O 여수시 옴부즈만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반영
 -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(분류식과 합류식 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 분리) 개선(안 제26조제2항, 별표 1, 별지 1)
 - 하수도 사용료 부과·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(안 제25조)
 - 과오납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규정 (안 제35조)
- O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, 띄어쓰기 등 (안 제17조제2항, 안 제18조제2호, 안 제19조제5항, 안 제20조제4항, 안 제24조제1항)

- 3. 입법예고기간 : 2021. 10. 19. ~ 11. 8.(20일간)
- 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·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(하수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제출 사항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주소,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 - 주 소 : 우)59761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(국동임시별관)
 -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하수도과)
 - 전 화: 061-659-4981, 팩 스: 061-659-5860
 - 이 메 일 : kimh8562@korea.kr
- **의견제출 방법** : 서면, 팩스(FAX), 직접방문, 이메일(E-Mail) 제출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

	조례명	:	여수시	하수도	사용	조례	일부개정(안)
--	-----	---	-----	-----	----	----	---------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	여부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그네는 0극을 네한	찬성	반대	그 근 (시 ㅠ /	기다 급표시 0

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"「물환경보전법」제32조제8항"을 "「물환경보전법」제32조제9항"으로, "수질하수도사용료"를 "수질하수도 사용료"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"을 "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3월분"을 "3개월분"으로 한다.

제18조제2호나목 중 "해수"를 "해수,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상수도사용자"를 "상수도 사용자"로 한다.

제19조제5항 중 "계측장치"를 "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"로, "하여서"를 "해서"로 한다.

제20조제4항 중 "납부기한 내에"를 "납부기한까지"로 한다.

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사용료"를 "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"을 "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"「장애인 복지법」"을 "「장애인복지법」"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제34조를 삭제한다.

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,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(소멸시효) 사용료(가산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「지방재정법」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.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6조 제2항)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(단위 : ㎡,원) ———

м х	사용구분	사 용 요 율		
업 종	(m³/월)	분류식	합류식	
	1~20	282	217	
가정용	21~40	403	310	
	41 이상	486	378	
	1~50	508	432	
OTHEO	51~100	1,474	1,253	
일반용	101~300	1,779	1,512	
	301 이상	2,439	2,073	
	1~500	559	475	
대중탕용	501~1,000	1,118	950	
	1,001 이상	1,341	1,140	
산업용	m³당	532	452	
공업용	m³당	73	3	

수질하수도 사용료(제16조제3항 관련)

□ 대상항목 : BOD 또는 COD, SS, 총인 또는 총질소

□ 사용료 산정기준

-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「<u>물환경보전법</u>」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「<u>물환경보전법」제32조제9항</u>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.
- O BOD 또는 COD,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
- 폐수배출량은「물환경보전법」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.

□ 수질하수도사용료

- 항목별 산출방식
 - 수질하수도사용료(원) = 오염부하량[수질초과농도(mg/L)×시간당 폐수배출량(㎡/시간)] × 1/1000(kg/g) × 1일 조업시간(시간/일) × 30일 × kg단가(원/kg)
 - *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.
- 수질하수도 사용료 = (BOD 또는 COD) + (총인 또는 총질소) + SS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・②	제16조(공공하수도 사용료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「물환경보전법」제32조제8항	③ 「물환경보전법」제32조제9항-
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	
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	
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	<u>수질하</u>
표 2에 따른 <u>수질하수도사용료</u> 를	<u>수도 사용료</u>
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	
제17조(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	제17조(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
징수방법) ① (생 략)	징수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	②
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방법을</u>	<u>사용료 징수방법</u>
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	<u>을 따로 정하여</u>
있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	⑤
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	<u> </u>
월기준 이전 <u>3월분</u> 을 평균하여 부	<u>개월분</u>
과 · 징수한다.	
제18조(하수배출량의 산정) 공공하	제18조(하수배출량의 산정)
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	
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	
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	2
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	

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 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 하여 확정한다.

가. (생 략)

나. 하천수, 온천수, <u>해수</u>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 호에 따른 신고량

다. (생략)

- 3.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<u>상수도</u>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.
- 제19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~ 저 ④ (생 략)
 - ⑤ <u>계측장치</u>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 는 물건의 적치,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제20조(공공하수도 점용료) ① ~ 저 ③ (생 략)
 -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 료를 <u>납부기한 내에</u> 납부하지 아 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제24조(감면 등) ① 시장은 다음 <u>각</u> 저 <u>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</u>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

 가. (현행과 같음) 나 <u>해수,</u>
 다. (현행과 같음) 3 <u>상수도 시</u> <u>용자-</u>
세19조(하수배출량의 조사) ① ~
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</u>
<u>해서</u>
· 세20조(공공하수도 점용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4
<u>납부기한까지</u>
세24조(감면 등) ① <u>각</u>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

<u>사용료</u>, 공공하수도 점용료, 원인 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<u>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</u>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
- 3. ~ 5. (생략)
- 6. <u>「장애인 복지법」</u>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신설 2 014. 1. 6., 개정 2019. 10. 1 4.)
- ② ~ ④ (생 략)

제25조(이의신청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과 절차 등은「지방세기본법」제1 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u><신 설></u>

제34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,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 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「지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_____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-------
- 3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<u>「장애인복지법」</u>-----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이의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
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
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
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
한다.

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<삭 제>

률」을 따른다.[본조 신설 2015.10. 2.]<신 설>

제35조(소멸시효) 사용료(가산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수수료 에 대한 소멸시효는 「민법」 제1 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「지방재 정법」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 다.

제35조 (생략)

제36조 (현행 제35조와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[별표 2] (개정 2010. 10. 6. 2014. 1. 6)	[별표 2]
수질하수도 사용료 (제16조제3항 관련)	수질하수도 사용료 (제16조제3항 관련)
□ 대상항목 : BOD 또는 COD, SS, 총인 또는 총질소	□ 대상항목 : BOD 또는 COD, SS, 총인 또는 총질소
 □ 사용료 산정기준 ○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. ○ BOD 또는 COD,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 ○ 폐수배출량은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2에 따라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. 	 □ 사용료 산정기준 ○ 수질하수도 사용료는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「물환경보전법」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 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. ○ BOD 또는 COD,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,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. ○ 폐수배출량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.
□ 수질하수도사용료 ○ 항목별 산출방식 - 수질하수도사용료(원) = 오염부하량[수질초과농도(mg/L)×시간당 폐수배출 량(㎡/시간)] × 1/1000(kg/g) × 1일 조업시간(시간/일) × 30일 × kg 단가(원/kg) ※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. ○ 수질하수도 사용료 = (BOD 또는 COD) + (총인 또는 총질소) + SS	량(m/시간)] × 1/1000(kg/g) × 1일 조업시간(시간/일) × 30일 × kg 단가(원/kg) ※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축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

현 행

[별표 1] (개정 2015. 10. 2)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6조 제2항)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				사 용 요 율				
업 종	사용구분 (㎡/월)	(11:	2015년 월분 검침사용량투	·터)	2016년 (11월분 검침 사용량부터)	2017년 (11월분 검침 사용량부터)		
		,	용구분 (㎡/월)	대당단기 (원)	m'당 단가 (원)	m'당 단가 (원)		
	1.00		1~10	131	001			
	1-20		11-20	188	204	233		
-) -1 0	01 40	9	21~30	225	0.01	222		
가정용	21~40		31~40	263	291	333		
8	al a la la		41-50	281	351	4.6.1		
	41이상		510 상	항상 394 351	401			
			1-20	181				
	1~50		21~50	526	428	489		
		업무용	51~100	634	1,242			
	51~100	0.838000	101~300	869		1,419		
일반용	91~IM		301이상	888	1,242	1,413		
	101~300		1~30	243	1,499	1,712		
	IDI OU	영업용	31~50	523	1,100	535555		
	301이상	0 90	51~100	766	2.054	2.347		
	812		101이상	990	2,004	2,043		
	1~500		1~200	207	471	538		
대중탕용	501~100D		XO1~3OO	411	942	1,076		
11000	10010 1상		1 01~500	448	1.130	1,291		
	PEVT-10		7010 남	679	1,100	1,291		
산업용	단 일	산업용	여당	320	448	512		
공업용	r.L 01	공업용	1~40,000	46	6.4	73		
0 11 0	단 일	ত প্র	40.TIP-}}	5.9	04	10		

개 정 안

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(제16조 제2항)

2.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

O *	사용구분	사 용	요율	
업종	(㎡/월)	분류식	합류스	
	1~20	282	217	
가정용	21~40	403	310	
	41 이상	486	378	
	1~50	508	432	
DINIO	51~100	1,474	1,253	
일반용	101~300	1,779	1,512	
	301 이상	2,439	2,073	
	1~500	559	475	
대중탕용	501~1,000	1,118	950	
	1,001 이상	1,341	1,140	
산업용	mi당	532	452	
공업용	mi당	7	3	

[여수시 공고 제2021-2785호]

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둔덕동 188-2번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제11호,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로위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계	27.3		14.0	도로대장 참조	
여수시 둔덕동 188-2	27.3	0.4	14.0	(허가민원과 비치)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10. 19.

여수시 공고 제 2021-2786호

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 공고

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17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-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-

면허	연장 허가	양식업의 종류	면적	양식장	면허기간	연장허가	수산자원 조성금	양식 업권 자		비고
번호	번호	(양식방법)	(ha)	위치	_ , , _	기 간	(천원)	주 소	성 명	•
11291	2021- 24	패류양식 (바닥식)	17.0	화양 옥적	2011.12.24. 2021.12.23.	2021.12.24 2031.12.23		순천시 해룡면 매안4길 **, **호	손*호	

문의전화 : 061) 659-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. 끝.

2021. 10. 19.

[여수시 공고 제2021 - 2788호]

도로지정 변경 공고

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674-43번지 외 1필지(659-1)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(변경)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구분	도 로	위 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당초	계		88	6	570		
변경	계		146	7.5	1,109		
당초	소라면	674-43	55	6	90	도로대장 참조	
사곡리	659-1	33	6	480	(허가민원과 비치)		
바카	소라면	674-43	88	7.5	663		
변경	사곡리	659-1	58	7.5	446		

※ 당초 도로지정공고 : 2020-1928호(2020. 7. 31.)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10. 19.